

# 제395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임시회)

##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4월26일(화)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5)
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184)
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0)
5.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1)
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8)
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8)
8.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3)
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4)
1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0)
1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408)
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2)
1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3)
1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04)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20)
1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8067)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15)
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19)
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0)
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56)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54)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3)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9)
28.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5)
29.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6)
30.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8)
3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54)

호 2110151)

3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22)
33.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2)
3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3)
35.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5)
36.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6)
3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020)
38. 항공우주청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3)
3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4)
4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3)
4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3)
4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6)
4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4)
4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021)
4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50)
46.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6)
47.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인사청문요청안
48.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49.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50.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5) ..... 4
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184) ..... 4
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4.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0) ..... 4
5.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1) ..... 4
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8) ..... 4
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8) ..... 4
8.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3) ..... 4
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4) ..... 4
1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0) ..... 4
1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1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408) ..... 4
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2) ..... 4
1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3) ..... 5
1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04) ..... 5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20) ..... 5
1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8067) ..... 5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15) ..... 5
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19) ..... 5

|                                                                         |    |
|-------------------------------------------------------------------------|----|
| 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0) .....                    | 5  |
| 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56) .....                    | 5  |
|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5  |
|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54) ..... | 5  |
|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3) ..... | 5  |
|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5  |
| 27.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9) .....                        | 5  |
| 28.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5) .....                 | 5  |
| 29.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6) .....            | 5  |
| 30.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8) .....                 | 5  |
| 3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51) ..... | 5  |
| 3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22) .....                        | 5  |
| 33.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2) .....   | 10 |
| 3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3) .....                   | 10 |
| 35.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5) .....               | 10 |
| 36.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6) .....                    | 10 |
| 3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020) .....       | 10 |
| 38. 항공우주청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3) .....               | 10 |
| 3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4) .....                    | 10 |
| 4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3) .....                    | 10 |
| 4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3) .....                    | 10 |
| 4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6) .....                    | 10 |
| 4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4) ..... | 10 |
| 4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021) .....                       | 10 |
| 4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50) .....                    | 10 |
| 46.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6) .....               | 10 |
| 47.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인사청문요청안 .....                              | 13 |
| 48.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 13 |
| 49.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 14 |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 15 |
| 50.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 15 |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원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

김영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국무위원들 반갑습니다.

구미시를 국회의원 김영식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인데 한상혁 방통위원장님께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그러합니다. 편안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미디어의 환경하에서 매체의 영향력이 SBS가 큼니까,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큼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외형이 넷플릭스가 크

겠지요.

○김영식 위원 크지요.

그런데 우리가 미디어 소비의 중심이 디지털로 옮겨 간 지가 꽤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김영식 위원 하지만 우리 미디어법 체계는 전통의 방송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반면에 새로운 인터넷 사업자에게 매우 관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그런 편이지요.

○김영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시면, 경쟁을 하는데 하나는 규제가 있고 하나는 규제가 없다 그러면 애로사항이 좀 많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이게 손을 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5월 1일이 되면 SBS 최대 주주의 의결 권한이 10%로 제한이 됩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님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상황이 맞는지.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전체적으로 미디어 산업의 발전……

○위원장 이원욱 그것은……

김영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저한테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김영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진행발언이 긴 상황이에요?

○위원장 이원욱 정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질문하는 것은 이따 질의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예.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김영식 위원 그래서 제가 뭐……

○위원장 이원욱 잠깐, 답변하지 마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위원장 이원욱 저한테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런 언밸런스된 부분들을 조금은 조속히 해결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욱 위원님들께 제가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을 대상으로 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법률을 상정하여 대체토론 등을 거쳐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진행한 후 인사청문요청안 관련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경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위원장과 간사의 양해를 얻어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5)
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184)
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0)
5.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1)
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8)
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8)
8.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3)
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4)
1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0)
1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408)
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2)

1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3)
1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04)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20)
1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8067)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15)
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19)
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0)
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56)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54)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3)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9)
28.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5)
29.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6)
30.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8)
3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51)
3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22)

(14시10분)

○위원장 이원욱 의사일정 제1항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식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의 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영식 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 김영식 위원장입니다.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24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이 중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영식 의원, 김상희 의원, 변재일 의원, 추경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즉 OTT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OTT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위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둘째,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또는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였고,

넷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스미싱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섯째, 사용 차단 통신단말장치의 범위를 ‘분실·도난된 장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상희 의원, 김영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현행 대통령령에서 법률에 상향 규정하였고,

둘째,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침해사고 신고를 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며 피해 확산 방지·사고 대응·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넷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속이는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우 실시해야 할 긴급조치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중지를 추가하였으며,

다섯째, 경찰청장 등은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편물 집배업무를 위탁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택배서비스사업 종사자에 대한 자격 제한과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집배서비스 이용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아 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적립금 또는 예금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체국보험 및 우체국예금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장기적 수익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책임투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지 아니하거나

취약점 분석·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문 신설에 따른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임시허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통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유료방송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송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신설되는 조문에 따른 사업자의 신고행위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탑재된 법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승래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조승래 위원장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2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1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법안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게 하며 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의 변경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 과학기술진흥 자문 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취지를 가진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재산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도록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문을 신설하는 대신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현행법 조항을 개정하여 조문 체계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철민 의원과 변재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제 기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고 항공운송사업자가 우주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항공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해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며 승무원에게 우주방사선 피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권성동 의원, 정희용 의원, 박완수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범문에

명시하고, 둘째 결격사유 중 형벌 기준에 관한 사항을 금고형에서 징역형으로 대체하며, 셋째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공사착공일 전에 해당 대형 방사선발생장치가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하도록 하고, 넷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에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의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욱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심사에 애써 주신 두 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2소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오랜만에 열렸는데요. 김영식 간사님이 새로 오셔서 열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저희 과방위 전체 법률이 통과율을 보면, 처리율을 보면 국회 전체 상임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1소위, 2소위 할 것 없이 조금 더 법률안 심의에 속도를 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의결에 앞서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은 예산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있어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야 하나 국회법 제66조제3항 등에 따라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생략 의결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김철민 의원,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생활주변방사선 안

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 정부가 제출하고 권성동 의원, 정희용 의원, 박완수 의원,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7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 정부가 제출하고 추경호 의원, 김영식 의원, 변재일 의원, 김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3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5항 김상희 의원, 김영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6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 등에 대한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회안의 작성 및 자구 수정과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주개발 진흥법, 천문법, 전기통신사업

법, 정보통신 융합법 등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안 다수를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법안 의결을 통해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민간 개방, 우주산업클러스터와 우주신기술 지정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공휴일도 월력요항에 포함되어 지방공휴일의 역사적 의미와 존재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정의 조항을 두어 세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완화하여 국내 통신시장이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실증특례 사업자의 사업수행 안정성을 보장하여 신기술 서비스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숙려하여 정책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장님, 김영식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하신 법률안이 통과되면 OTT 콘텐츠 세액공제에 앞서 지원 대상 사업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되는 등 OTT 산업 진흥 정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법 시행 과정에서 그 취지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존경하는 이원욱 위

위원장님, 과학기술원자력법안소위 위원님들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법안과 생활 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을 통해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착공 전에 확인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방사선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용 원자로 인근 주민에 대한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근거 마련을 통해 건강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필요한 신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결격사유의 형벌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법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승무원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승무원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률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33.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2)

**3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3)

**35.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5)

**36.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6)

**3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020)

**38. 항공우주청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3)

**3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4)

**4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3)

**4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3)

**4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6)

**4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4)

**4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021)

**4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50)

**46.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6)

(14시33분)

○위원장 이원욱 의사일정 제33항 국가초고성능 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제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과기정통부가 이번에 제출한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과학벨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기능이 유사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기관의 수가 늘어나고 체계적인 보호대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점을 고려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수를 25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원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

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셔서 제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저희들은 제출안이 따로 없습니다. 정부 제출안이 없어 가지고……

○위원장 이원욱 그래요?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예.

○위원장 이원욱 원안위원장은 있나요?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없습니다.

○위원장 이원욱 고맙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좌석 단말기의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 중 두 번째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1항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경우 유통 방지조치 의무에 더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시킨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수사 단서를 제공하여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4항 정부가 제출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25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증원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의 차관급 공무원도 동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위원의 위촉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최근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관련 기관 확대 추세와 정부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위원회의 전문성 및 중립성 제고라는 민간위원 위촉 취지를 고려할 때 민간위원 위촉 근거 삭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6항 이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립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지역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재난방송 등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지적인 재난·재해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어 지역 차원의 재난방송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지역방송의 제작 여건은 재난방송 인력 및 장비, 재난정보 등이 제한적이어서 재난방송 기준에 적합한 재난방송 실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지역 재난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원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성구 전문위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6항까지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각각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핵융합위원회,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법상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해당

위원회는 국가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서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부정 개입을 차단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정부가 제출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 실적이 저조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로 통폐합하려는 것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는 사업 초기에 주요 내용에 대한 협의를 마쳐 2016년 이후 최근까지 회의 실적이 1건밖에 되지 않아 유지할 필요성이 적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로 통폐합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우주청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대통령 소속 항공우주청을 신설하여 종합적인 우주개발 및 항공우주산업 육성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주개발 및 항공우주산업 분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수립이 필요한 분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여된 국가기관에 의해 안정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나 항공우주청의 조직 형태와 소속에 대해서는 향후 전체 정부조직 개편 방향과 함께 연계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원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법률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손 들어 주시면 지명해 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서면질의도 없습니다.

오늘 상정한 법률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관에 따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장관, 방통위원장, 원안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기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일단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당 간사 간에 협의 중이어서요 시간이,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을 넉넉하게 잡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인사청문과 관련된 계획서 그리고 증인 등등에 대한 의결이 있는 날이어서요, 그래야지 저희가 지금 가안으로 잡고 있는 5월 3일 날 인사청문회가 가능하게 진행될 수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바쁘시겠지만 의결에 정족수 문제가 있으니 가급적이면 자리를 좀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상희 위원 위원장님, 3시 10분 이게 조금 시간이 너무 애매해서요. 지금 우리 당의 의총이 3시에 있거든요. 참여했다가 3시 반 정도, 확실하게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원욱 국힘도 의총 있어요?

○황보승희 위원 저희는 4시에 의총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욱 그러면 잠깐만 들러…… 한 3시 20분쯤 할까요?

○우상호 위원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결정을 통보해 주세요.

○위원장 이원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3시 20분에 하는 걸로 하고 가안을 잡고 저희가 합의가 안 되거나 하면 다시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원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사청문 관련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 47.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인사청문요청안

#### 48.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원욱 의사일정 제47항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48항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지난 4월 14일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실시 일정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사청문요청안의 심의 절차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5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루 동안 실시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되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는 인사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해야 하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개최 48시간 전인 5월 1일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서면질의를 4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두질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두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후보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질의요지서는 인사청문회 전날인 5월 2일 오전 9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시면 지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승래 간사님.

○조승래 위원 항상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를 하면 늘상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자료제출 문제로 당초에 전체회의를 해서 청문계획서 채택을 하기로 했지만 그게 좀 늦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러면 자료제출이 제대로 됐느냐?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 위원들 3분의 1의 요구로 자료제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추가로 제출된 것들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의결을 하겠습니까만 5월 3일 날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개인 신상과 관련된 자료가 제때 제출이 되어야, 그걸 바로바로 보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야 국감이 정책국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혹 제기, 약간 의심이 간다 자꾸 이런 문제를 질의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국감장이 소위 인신공격을 하거나 도덕성 검증은 하거나 지나치게 신상을 파거나 또 가정 문제까지 나간다는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후보자에게 잘 고지를 해 주셔서 자료를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원욱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김영식 간사님.

○김영식 위원 자료제출은 충분히 잘되기를 저는 희망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무엇보다 지금 의혹에서 의혹으로 이렇게 자꾸 언론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이 의혹으로 자꾸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이 규명되고 난 다음에 언론에 나가면 좋은데 이게 검증 차원 전에 이렇게 언론에서 먼저 검증이 되는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언론에 나고, 맞거나 안 맞거나 그것이 공개가 됐었을 때 그 후보자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인사청문회에 임해 줬으면 고맙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욱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인사청문회라든가 진행을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꽤 중립적인 위치에서 해 보자라고 하는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최기영 장관후보자라든가 임혜숙 장관후보자 때도 당시의, 여전히 그때도 많은 자료들이 미흡하게 제출되면서 당시의 야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의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현장에서 제가 강력히 요구해서 아마 받은 자료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무조건 자료제출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실제 자료가 빨리빨리 제출돼서 쓸데없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고 이 청문회장이 진정으로 정책감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고 나서 바로 조승래 간사님과 김영식 간사님한테 이틀을 해 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성과 관련된 것은 완전히 비공개로 우리끼리 하고 나머지는 정책감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루는 저희들이 제대로 정책감사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드렸던 이유 또한 도덕성 문제 때문에 인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이런 풍토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던 건데 그것은 이루어지지 못했지요.

그리고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저희 민주당 원내대표단 등등한테 누가 정권을 잡을지 모르는 이 순간이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결국 인사청문회법은 개정되지 못하고 또다시 새로운 정권이 교체가 되고 이러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특히나 김영식 간사님께서도 저도 전달을 하겠다라는 이종호 후보자님한테 각별히 말씀을 하셔서, 자료제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미리미리 협조해 주십사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인사청문회에 대한 기존의 저의 생각, 소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과도하게 이것이 개인의

도덕적 흠결 문제만으로 치러지는, 인사청문회가 5월 3일 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우려가 있고요.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정책이 제대로 밝혀지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도 많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아직은 야당이시지만 곧 여당이 되시는 국민의힘 간사님께서 특별히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9.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16시01분)

○위원장 이원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고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제출 요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 전까지 56개 기관에 대해서 총 1329건의 자료제출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자료제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기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5월 1일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종료 이후 위원회 행정실을 통해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려는 경우는 위원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7인 이상이 서명하여 4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까지 행정실로 접수해 주시면 해당 기관에 송달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기관은 자료 준비 시간 등을 감안하여 5월 2일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의원실에서 청문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제출 기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50.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종호)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6시02분)

○위원장 이원욱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추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이종호) 인사청문회 참고인 출석 요  
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9조 및 인사청문회법 제8조에 따라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증인·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은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  
고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되  
어야 합니다.

두 분 간사님과 협의를 거쳐 참고인 강인규  
KIP 대표이사, 최성율 카이스트 기술창업원 원장,  
박태서 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단 NANO CMOS  
개발과제 공동연구원 등 3인을 핀셋 특허 권리  
및 이해상충 관련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인사청문회 참고인 출석 요구 대상으로 선  
정하였으니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참고  
인을 신청한 위원이 변경 또는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해서 변경 또는  
철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인사청문회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공무원, 보좌관

등 국회 직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 ○출석 위원(17인)

|       |       |       |       |
|-------|-------|-------|-------|
| 김 상 회 | 김 영 식 | 박 성 중 | 변 재 일 |
| 양 정 숙 | 우 상 호 | 윤 영 찬 | 이 용 빈 |
| 이 원 욱 | 임 병 헌 | 진 혜 숙 | 정 필 모 |
| 조 승 래 | 허 은 아 | 홍 석 준 | 홍 익 표 |
| 황보승희  |       |       |       |

#### ○청가 위원(3인)

|       |       |     |
|-------|-------|-----|
| 정 희 용 | 조 정 식 | 황 희 |
|-------|-------|-----|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             |       |
|-------------|-------|
| 수 석 전 문 위 원 | 조 기 열 |
| 전 문 위 원     | 한 성 구 |
| 입 법 심 의 관   | 박 동 찬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장 관       | 임 혜 숙 |
| 제 1 차 관   | 용 홍 택 |
| 제 2 차 관   | 조 경 식 |
| 연구개발정책실장  | 고 서 곤 |
| 정보통신정책실장  | 박 윤 규 |
| 네트워크정책실장  | 홍 진 배 |
| 과학기술혁신조정관 | 오 태 석 |

방송통신위원회

|             |       |
|-------------|-------|
| 위 원 장       | 한 상 혁 |
| 부 위 원 장     | 안 형 환 |
| 기 획 조 정 관   | 배 중 섭 |
| 방 송 정 책 국 장 | 양 한 열 |

원자력안전위원회

|         |       |
|---------|-------|
| 위 원 장   | 유 국 희 |
| 사 무 처 장 | 장 보 현 |
| 방사선방재국장 | 신 재 식 |